

# 보라매공원 건강걷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

---

서울특별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와 서울특별시 동작구보건소는 도시공원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·운영하기 위하여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.

**제1조(목적)** 본 협약은 사업소가 도시공원을 활용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 보건 의료서비스의 거점인 보건소와 협업하여 공원 이용 시민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프로그램 개요)** 본 협약의 목적인 건강 걷기 프로그램의 운영 개요는 다음과 같다.

1. 프로그램명: 보라매공원 건강걷기 ‘알고 걸으면 건강 두배!’
2. 기 간 : 매년 4월~11월 (7,8월 제외) 월·수요일 오전 10시~11시
3. 장 소 : 보라매공원 잔디광장 트랙 및 보행로 데크
4. 내 용 : 스트레칭, 산책로 걷기, 하체근력 강화운동 등

**제3조(협력분야)** 본 협약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사업소와 보건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력한다.

1.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적·물적 자원의 포괄적인 교류
2. 강사 섭외 및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세부 계획 수립
3. 공원 이용 시민들의 참여 유도 및 홍보, 장소 제공
4. 기타 건강정보, 건강강좌 및 건강관리 기관의 활용 방안 등

**제4조(협력기간)**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2018. 12. 31. 까지로 한다. 다만 협약기간의 연장 및 단축이 필요하다면 인정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협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.

### 제5조(협약의 해지)


- ① 사업소와 보건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사유를 일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 1. 일방 당사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
  2. 기관 사정상 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
  3. 기타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
- ② 위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통보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시점부터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.

**제6조(비밀유지)** 사업소와 보건소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사실이나 자료를 상호간 사전 합의 없이 협약의 목적에 무관하게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, 이는 협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유효하다. 만약 이를 위반 시 상대방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.

**제7조(법적 구속력 배제)** 제6조를 제외한 본 협약서 상의 내용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각 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.

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서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소와 보건소는 협약서를 작성하여 대표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8년 3월 7일

 **서울특별시**  
동부공원녹지사업소

소장 이 용 태

---

 **동작구**  
보건소

소장 모 현 희

---

### 제5조(협약의 해지)

- ① 사업소와 보건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사유를 일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1. 일방 당사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
  2. 기관 사정상 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
  3. 기타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
- ② 위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통보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시점부터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.

**제6조(비밀유지)** 사업소와 보건소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사실이나 자료를 상호간 사전 합의 없이 협약의 목적에 무관하게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, 이는 협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유효하다. 만약 이를 위반 시 상대방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.

**제7조(법적 구속력 배제)** 제6조를 제외한 본 협약서 상의 내용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각 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.

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서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소와 보건소는 협약서를 작성하여 대표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8년 3월 7일



**동작구**

**보건소**

소장 모 현 희

---



**서울특별시**

**동부공원녹지사업소**

소장 이 용 태

---